

참 고

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

확인 사항	RCEP	한-아세안 FTA
공통 · 필수	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원본 * 사본(전자본 포함)으로 대체 가능	좌 동
수출 · 거래사실 확인	③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갈음 서류 *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** 수출관리 부호가 76, 78, 79, 93번인 경우 ⑤, ⑥ 서류 제출 생략 ④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	좌 동
수출 · 입 물품간 동일성 여부 확인	⑤ 최초 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사본 * 보세구역 반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신고서로 대체 가능 ⑥ 최초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	좌 동
양 · 수도 확인	⑦ 양 · 수도 사실 및 거래 수량 (중량) 확인 서류 * 국내 양 · 수도 물품으로 한정	-
관세차별 물품 원산지국가 확인	⑧ RCEP 원산지국가 확인 서류 *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, 제조공정도, 원료구입명세서 등	-